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70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김태년 · 민병덕 · 윤종균
김문수 · 이광희 · 복기왕
김 윤 · 이재정 · 김한규
한준호 · 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 3. 28. 시행)으로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차 또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게 되었으나,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령」은 교통사고의 범위 및 형사처벌 등 특례 대상을 차에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운전자가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시킨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특례 부여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

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1의2. “노면전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노면전차(路面電車)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가”를 “차 또는 노면전차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2. “교통사고”란 <u>차</u> 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노면전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u>노면전차(路面電車)</u> 를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u>차</u> 의 운전자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u>차</u> 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처벌의 특례) ① <u>차 또는 노면전차</u> ----- ----- ----- -----. ② <u>차 또는 노면전차</u> ----- ----- ----- ----- ----- ----- -----.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략)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

[illegible]

1. ~ 12. (현행과 같음)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
차 또는 노면전차가-----

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 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